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안전보건 현황
공시 가이드

2026. 11.

이 자료는 공시대상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며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할 예정으로, 확정된 공식자료가 아님

고용노동부

Contents | 목차 |

Ⅰ 안전보건공시제 개요 1

Ⅱ 공시의무 사업주 4

1. 대상 사업주 ····· 4
2. 대상 사업주 판단 기준 ····· 5

Ⅲ 공시 항목 6

1. 일반 현황 ····· 6
2. 안전보건관리체제 ····· 9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2
4.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 14
5. 안전보건 투자현황 ····· 16
6.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 22
7. 산업안전보건 보고서 ····· 23

Ⅳ 공시 절차 24

Ⅴ Q&A 25

Ⅰ 안전보건공시제 개요

배경

○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 도입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공시의무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공시방법

○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에 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내 '안전보건공시시스템'에 공시

* 안전보건공시시스템 : portal.kosha.or.kr/disclosure (URL 확정 후 수정 예정)

공시항목

❶ 안전보건관리체제
❷ 산업재해 발생 현황
❸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❹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❺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
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제10조의2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2. 법 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1호의2	1,000	1,000	1,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Ⅱ 공시의무 사업주

1 대상 사업주

① 공공 부문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전년도 말(12.31)** 기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경우 해당
다만, 공시기한(4.30) 현재 해산 또는 폐업한 경우는 제외

② 민간 부문

○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

* 사업주가 여러 업종을 운영할 때, 대표업종이 건설업인 경우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기준을 따르고, 대표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 상시 근로자 기준을 따름

○ **(공시 단위)** 공시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장소적으로 분리·운영되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

-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 소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

  * (예) 건설현장, 은행지점 등 다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 본사에서 현황 파악 후 합산 공시

  * 해외 소재 사업장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사업체(법인)인 경우, 각각의 사업체(법인) 단위로 공시

2 대상 사업주 판단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7.2)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산정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 근로자수 = 전년도 12월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연간 건설공사금액)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간 건설공사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의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의 '전년도 전기공사 실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3항 '공사실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Ⅲ 공시 항목

1 일반 현황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1 사업체명(법인명)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식 명칭	자동 입력 (로그인 정보 기반)
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 등기소 부여 13자리 고유 식별번호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10자리 사업자번호)	자동 입력 (로그인 정보 기반)
2-❶ 법인(사업자) 설립일	○ 법인(사업자) 설립일 기재	날짜(숫자) 입력
3 대표자명	○ 법률적으로 사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텍스트 직접 입력
4 본사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입력 (로그인 정보 기반)
5 사업장 수	○ 법인 소속(동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수 *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개소 구분, 본사·지사·현장 등 각각 산재보험 가입 시 개별 개소로 산정	사업장 선택 또는 등록양식 업로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6 기업유형	○ 해당 법인(사업체)의 기업유형 * 법인(건설업 외), 법인(건설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개인사업자 중 선택	항목 선택
7 대표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주된 업종명	항목 선택
8 상시 근로자수	○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숫자 직접 입력
8-❶ 연간 건설공사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전년도 공사실적금액 (대표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숫자 직접 입력
9 담당자(부서, 연락처)	○ 공시 담당자 정보	텍스트 직접 입력 (비공개)

※ 기준 : 등록일 기준 사업장 현황 작성

단, 사업장 수, 대표업종 및 상시 근로자수(연간 건설공사금액)는 공시연도(전년도) 12. 31. 기준

1 사업체명(법인명)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공식 사업체명(법인명)

2 법인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13자리 고유 식별번호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2-❶ 법인(사업자) 설립일

- 법인(사업자)의 설립일자 기재

3 대표자명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공식적인 책임자로 법인이나 기업, 단체 등 사업체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4 본사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본업을 영위하는 주된 사업장

5 사업장 수

- 법인 산하(동일 법인등록번호) 소속 사업장 수
-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개소 구분하며 국내 소재 본사·지사·현장 등 각각 산재보험 가입 시 개별 개소로 산정
- 동일 법인등록번호 산하 사업장을 선택하거나 등록양식(엑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입력하여 업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판단

6 기업유형

- 해당 법인(사업체)의 기업유형(법인(건설업 외), 법인(건설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개인사업자 중 선택)

7 대표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주된 업종명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판단

8 상시 근로자수

- 전년도말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기재

  * 임시직, 일용직,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

8-❶ 연간 건설공사 금액(대표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전년도 공사실적금액

9 담당자(부서, 연락처) ※ 비공개

- 공시대상 기업·기관의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연락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안전보건관리체제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10 안전보건 관리 인력	◦ 본사 및 사업장의 전담인력 합계 ◦ 법적 선임 인력과 안전보건 전담 부서 인원을 합한 숫자를 기재, 전담( )/겸임( )	숫자 직접 입력
10-❶ 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무	◦ 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무	유/무 박스 체크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운영 사업장 수 및 회의개최 실적	텍스트 직접 입력
12 기타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기타 현황 (대표사례 기재,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	텍스트 직접 입력

※ 기준 : 인력 및 전담조직은 공시연도(전년도) 12.31. 기준으로 입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및 기타 현황은 공시연도(전년도) 1.1~12.31 전체 현황을 입력

10 안전보건 관리 인력

- 본사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전담인력을 합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 선임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의 총 인원수를 기재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나, 그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인력 총원에 포함하지 않고 겸임으로 별도 기재
  *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해외사업장에 상주하는 안전보건 전담인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 선임인력이 아닌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선임된 인력(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은 '12 기타 현황'에 기재
  * 안전관리 대행, 안전순찰·점검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안전보건 전담 인력에서 제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❶ 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무

-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전담 부서** 유/무를 체크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을 의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대상이 아니나 전담 조직을 둔 경우에도 '유'로 체크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것을 전담 조직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단순히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유"로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운영 사업장 수 및 회의 개최 실적

  *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기재

12 기타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소방, 환경 등 기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공시시스템에서 기재 여부 선택)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 선임인력 또는 전담인력은 아니지만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총원(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위소방대 인력,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자체소방대 인력,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및 활동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안전보건관리 전담인력 구성 현황

작성 시 참고사항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항목의 상세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고, 구체적인 현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13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사고·질병) 승인 현황 -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사고·질병) 현황 - 도급사업장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 - 건설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현황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한정)	숫자입력 (필요시 설명)

※ 기준 : 공시연도(전년도) 1.1~12.31. 승인된 산업재해 현황 입력

13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산업재해 승인 기준)

  * 사고부상자수, 사고사망자수, 질병이환자수, 질병사망자수

  * 사고사망자 수에서 아래의 경우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참고)
    -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를 제외하지 않음)
    - ▸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 ▸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자 수

  * 산업재해(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건 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경우에 한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설발주공사에서 발생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자 수

  * 산업재해 승인(유족급여)을 받은 건 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수 기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작성 시 참고사항

- 산업재해는 공시 전년도 승인을 기준으로 작성(1.1~12.31까지 승인된 건)

4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⑭ 근로자 참여활동	◦ 근로자가 안전 보건활동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활동	텍스트 직접 입력 〈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⑮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텍스트 직접 입력 〈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⑯ 기타 안전보건 활동	◦ 기타 안전보건 활동 대표 사례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	텍스트 직접 입력 〈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 기준 : 공시연도(전년도) 1.1~12.31. 전체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 입력

⑭ 근로자 참여활동

-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실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2.안전보건관리체제 ⑩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에 기재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안전점검·패트롤 참여) 근로자 참여 합동점검, 작업전 TBM활동, 불안전상태 신고 등
- (사고·아차사고 조사) 근로자 조사위원 참여, 아차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제안 등
- (안전개선 제안제도) 안전 아이디어 제안, 우수제안 포상, 제안반영 사례 공개 등
- (작업중지권 행사) 위험작업 자발적 중지, 중지 후 개선조치 협의, 재개 승인절차 참여 등
- (안전문화 활동) 안전 캠페인 기획 참여, 무재해 실천 결의, 안전리더 활동 등

⑮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사내하도급 적격성 관리) 안전보건관리 수준 정기 평가, 중대재해·법 위반 이력 반영, 협력사 안전관리 상주인력 확보 관리 등
- (공동 위험성 평가) 공정별 합동 위험성 평가, 수급인 의견반영, 개선조치 공동 이행
- (현장 안전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불안전상태 즉시 조치, 개선사항 이행 확인
- (안전시설·장비 공동사용) 원청 안전시설 및 장비 공동 사용, 방호장치 공동 적용, 보호구 공동 지급
- (상시 소통체계) 사내하도급 안전협의체 운영, 정기 간담회 개최, 개선요청 상시 접수

16 기타 안전보건 활동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안전보건 활동 대표사례를 작성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최고경영자 안전활동) CEO 현장 안전점검, 경영층 안전회의 주재, 중대재해 예방메세지 발표
- (안전보건 성과관리) 안전 KPI 설정·평가, 관리자 안전성과 반영, 사고 감소 목표 관리
- (외부 평가·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MS) 인증유지, 외부 안전진단 실시
- (기술·디지털 활용) VR 안전체험 교육, AI 위험예측 분석, 빅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 (안전취약계층 보호 활동) 고령 근로자 맞춤 조치,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교육, 신규·초보자 집중 관리
- (재난·비상 대응 역량) 비상대응 모의훈련, 화재·폭발 대응 훈련, 지역소방 합동 훈련
-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역 안전 캠페인 참여, 협력사 안전 컨설팅 지원, 안전교육 개방
- (제도개선·자율규제) 사내 안전규정 강화, 법개정 선제 적용, 자체 안전기준 상향
- (노동자 건강증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센터 등 마음건강 관리 지원

작성 시 참고사항

- 전년도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 안전보건 활동 이행 및 계획은 안전보건투자 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
-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작성시, 개인정보 및 기업·기관 대외비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구성 항목의 상세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고, 구체적인 현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

5 안전보건 투자현황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17 **인건비** 안전보건 전담 인력 인건비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법정 선임 인력의 인건비	금액 숫자 입력, 텍스트 직접 입력
18 **안전문화·체계구축** 안전보건 교육·컨설팅 및 체계 구축	◦ 각종 교육 및 모의훈련 비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객관성을 검증받고,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금액 숫자 입력, 텍스트 직접 입력
19 **시설·장비 투자** 안전보건 관련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 ◦ 보호장구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및 IT 기술 투자비	금액 숫자 입력, 텍스트 직접 입력
20 **보건 관련 투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 직업성 질병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적 성격의 지출 비용	금액 숫자 입력, 텍스트 직접 입력
21 **협력사 지원**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업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의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 관련 지원 비용	금액 숫자 입력, 텍스트 직접 입력
22 **기타** 그 외 안전보건 투자 비용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안전보건 관련 지출 비용	금액 숫자 입력, 텍스트 직접 입력
23 -❶ **합계** (22 기타 제외)	◦ 17 ~ 21 항의 합산 총액(전년도 실적) * 22 항 기타를 제외한 합산 총액	금액 숫자 입력 (자동합계)
23 -❷ **합계** (22 기타 포함)	◦ 17 ~ 22 항의 합산 총액(전년도 실적)	금액 숫자 입력 (자동합계)
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표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기재	금액 숫자 입력

※ 기준 : 공시연도(전년도) 1.1~12.31. 전체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실제 집행한 금액 입력

17 인건비 안전·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법정 선임 인력 인건비
- 전담부서 이외의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인건비 포함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직원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법정 선임 인력의 인건비

Tip

- ▸ 급여, 수당 및 인센티브(성과급) 포함
-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및 복리후생 지원은 제외
-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 선임인력이 아닌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선임된 인력의 인건비는 '22 기타' 항목에 기재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 ▸ 소속 외 근로자(예: 협력사 신호수, 밀폐공간 감시자 등)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은 제외 (21 항목에 기재)
- ▸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22 기타' 항목에 기재

18 안전문화·체계구축 안전보건 교육·컨설팅 및 체계구축 등

- 안전보건 관련 각종 교육 및 모의훈련 비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증 및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법정 안전보건 교육 강사료 및 위탁비
-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등 비상대응 모의훈련 추진 비용
- 안전체험장 구축, VR 체험형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교재 구입비
- 무재해 목표 달성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금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 캠페인 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외부 컨설팅 수수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 MS 등) 인증 취득 및 사후 심사 유지비
-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안전보건진단·작업환경측정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비

Tip

- ▸ 협력사 전용 교육시설 운영비는 21 번 항목으로 기재
-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및 진단비용 포함

19 시설·장비 투자 안전보건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및 운용 비용

- 작업장 및 관리 대상 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안전보건 장비 및 IT 기술 투자비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임대 비용
- 안전·보건관련 노후 설비·장비 및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덮개, 센서 등) 교체 및 보강 비용
-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국소배기장치 설치·교체, 소음질환 예방을 위한 차음·흡음시설 설치 등)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호복, 방독마스크 등) 구입 비용
- 스마트안전장비(지능형 CCTV, 충돌방지 센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등) 설치·운영 비용
- 가스·산소 농도측정기, 이동식 송풍기 등 임차 및 구입비
- IT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안전보건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비용, 시스템 운영비
-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비용은 포함
  (단, 공장 건립 등 신규 건설발주공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외)

Tip ▸ 생산설비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안전보건이 향상되는 경우는 '22 기타' 항목에 기재

20 보건 관련 투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적 지출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임직원 일반/특수 건강진단 비용
- 작업환경 측정 비용,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비용
- 폭염·한파 등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목적의 물품 구입 비용
- 휴게시설 설치 비용
- 사내 부속의원(건강관리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센터 운영,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

Tip ▸ 기타 '작업환경 개선 시설비' 등 설비투자 비용은 19 번 항목으로 기재
▸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예방접종 지원비 포함 가능

21 협력사 지원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업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의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 관련 지원 비용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적격수급업체 평가 및 심사비, 합동점검 및 협의체 운영비
- 안전평가 우수 협력사 포상 및 인센티브 비용
- 소속 외 근로자(예: 협력사 신호수, 밀폐공간 감시자 등)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 비용
-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활동 지원 비용

Tip
- ▸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
- ▸ 정부 주도 상생협력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 지원비 포함 가능

22 기타 그 외 안전보건 투자 비용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안전보건 관련 지출 비용

참고 주요 사례 예시

- 전담인력 외 인건비(공시시스템에서 기재 여부 선택)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 선임인력이 아닌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선임된 인력의 인건비(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비용
- 안전보건 향상을 수반하는 시설·장비 투자(공시시스템에서 기재 여부 선택)
  - 생산설비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안전보건이 향상되는 경우

Tip
-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22 기타' 항목에 기재
- ▸ 화재보험이나 안전사고 보상 등을 위한 '보험료'는 제외

23-❶ 합계(기타 제외)

- 기타투자 항목을 제외한 17~21 항목의 합산 총액(전년도 실적)

23-❷ 합계(기타 포함)

- 17~22 항목의 합산 총액(전년도 실적)

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표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작성 시 참고사항

- 17~21 항목은 각 카테고리에 맞게 작성, 그 외 안전보건 투자내용은 22 에 기재
-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

참고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

공시항목	내 용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17 인건비 안전보건 전담 인력 인건비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법정 선임인력의 인건비	8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18 안전문화·체계구축 안전보건 교육·컨설팅 및 체계 구축	◦ 각종 교육 및 모의훈련 비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객관성을 검증받고,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2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등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 예산 5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 등
19 시설·장비 투자 안전보건 관련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 ◦ 보호장구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IT 기술 투자비	4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6 안전 R&D
20 보건 관련 투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 직업성 질병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적 성격의 지출 비용	2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등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21 협력사 지원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업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의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 관련 지원 비용	
22 기타 그 외 안전보건 투자 비용	◦ 안전보건 전담인력 외에 기타 안전·보건 관련 법률에 따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선임되는 인력의 인건비 ◦ 대규모 시설 및 생산장비 투자 등 비경상 예산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안전보건 관련 지출 비용	1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2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등 ① 안전사업비 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 제외 9 기타 * 화재보험, 상해책임보험 제외

6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25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텍스트 직접 입력 또는 해당없음 체크

※ 기준 : 공시연도(전년도) 1.1~12.31. 기준

25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개요 및 재발방지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일정)을 기재
  * 공시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 건(소속 근로자 및 도급사업장 발생)은 반드시 작성
  * 사고사망 건 이외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기관의 재해 발생 특성(동일유형, 반복발생 재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 체크
  * 추후「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의2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연계(링크) 예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사고 조사 결과 산업재해 개요와 재발방지 대책, 그 이행계획에 대하여 기재
-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항목의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고, 구체적인 현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

7 산업안전보건 보고서

공시항목	내 용	입력방법
26 산업안전보건 보고서	○ 공시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련 세부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	파일 업로드

26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예시)

구분	세부 항목
1. 안전보건 관리체제	대표이사 안전메시지,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인력 현황 및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활동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사고·질병) 승인 현황
3. 전년도 활동 실적 및 해당연도 계획	근로자 참여 활동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기타 안전보건 활동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인건비, 안전문화·체계구축, 시설·장비 투자, 보건 관련 투자, 협력사 지원, 기타 안전보건 비용
5.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상세
6. 기타	기타 안전보건 내용

※ 안전보건과 관련한 공시연도(전년도) 1.1~12.31 전체 현황 및 해당연도 계획 작성

작성 시 참고사항

- 개별 기업이 작성한 '산업안전보건 보고서' 업로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제출 가능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보건 계획(전년도 추진실적 포함)' 제출 가능
- 형식 및 내용구성에 제한은 없으며, PDF파일로 업로드(30MB 이내)
- 임직원의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Ⅳ 공시 절차

대표자 확인

○ 공시내용에 대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업로드

* 대표자 확인서, 공시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결재문서,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대표이사 참석)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안전보건 현황 공시 내용 확인서

본인은 *(사업체 명)* 의 대표자로서 *(공시연도)* 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공시된 내용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공시 항목은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 현황 공시 가이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０００ (서명)

* 2027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내용은 2026년의 안전보건 현황임
- 2027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내용 확인서의 공시연도는 2026년

V Q&A

제도 관련

Q1 안전보건 현황 공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 해야하는 기업·기관은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공시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며, 6월 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Q2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현황도 공시해야 하나요?

- 본 제도의 사업장 범위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며, 법인기업 또는 기관 등의 소속 사업장 현황을 취합하여 공시합니다.

Q3 안전보건 현황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대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경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안전보건 현황 공시항목의 작성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현황의 경우 등록일 기준 사업장 현황 작성하되, 사업장 수, 대표업종, 상시 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금액)는 공시연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일반현황 외의 세부 항목은 공시연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안전보건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되,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경우 해당 연도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Q5 공시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공시항목별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하여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Q6 대표업종의 경우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업·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9.7)

○ 특정 산업 해당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Q7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나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대상 범위

Q1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에 개별 사업장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포함해야 되나요?

-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사와 개별 사업장, 소속기관은 하나의 대상 기업·기관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기업·기관은 별도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공시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어도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별 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하여 합산 후 일괄 공시해야 합니다.
-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법인 단위로 공시하고,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별도의 법인 단위로 공시해야 합니다.

Q2 대표사업장(본사)에서 개별 사업장,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나요?

- 대표사업장(본사)에서 소속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현황을 취합 및 공시합니다.

Q3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공시대상 인가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공시대상이 됩니다.

Q4 공시 기준시점(4.30.)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가 5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하나요?

-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준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4월 30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가 500명 미만이라도, 전년도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Q5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0명 이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Q6 건설업 사업주인데 연간 건설공사 금액은 기준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는 공시 대상인가요?

- 주된 업종(대표업종)이 건설업이고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라도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고 주된 업종(대표업종)이 건설업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에 해당됩니다.

Q7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부도처리가 된 경우에도 공시대상이 되나요?

- 4.30일 기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 또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미만)에도 공시를 할 수 있나요?

- 공시 대상 기업·기관이 아니더라도 안전보건 공시 시스템에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수 및 건설공사금액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실제 숫자 및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미공시 등 관련

Q1 공시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이 공시하지 않은 경우는?

- 공시 대상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공시 이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 공시시스템상에 수정 신청을 한 후 대표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사유와 최종 수정일이 표기됩니다.

Q3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Q1 '내용 작성'에서 내용입력 시 계속 오류가 발생해요.

- 오류의 원인은 한글 또는 워드, 파워포인트 등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복사 후 붙이기 기능으로 업로드 할 때 발생합니다.
- 텍스트 창에 대표적인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를 통해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Q2 안전보건 현황 등록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공시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담당자별 법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상 동시접속은 불가능합니다.

Q3 로그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정부 통합로그인(Any-ID)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가이드

고용노동부